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이용 안내문

☞ 영유아보육법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지원 서비스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**(보육료)** 2016.7.1일부터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'맞춤형 보육'제도가 시행됩니다. (0~2세반 이용아동 대상, 누리아동 제외)

※ 2016.6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

▣ 어린이집에 다니는 0~2세반 아동은 부여된 보육료 수급 자격(종일형/맞춤형)에 따라 어린이집의 종일반(12H)과 맞춤반(7H)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① (종일반) 7:30~19:30 (일 12시간), '종일형 자격' 을 부여받은 아동

※ (종일반 사유) 맞벌이, 구직, 임신, 다자녀, 조손·한부모, 질병·장애, 저소득층 등

② (맞춤반) 9:00~15:00 (일 6시간) + 긴급보육바우처 15시간, '맞춤형 자격' 을 부여받은 아동

-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형 자격 아동이 맞춤반 보육시간 이외에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사용하며, 미사용분은 12월 31일까지 이월하여 사용 가능

※ 바우처 사용내역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http://childcare.go.kr) 또는 모바일 앱(아이사랑)에서 확인 가능(2016.7월 이후)

※(주의사항)

① 종일형자격과 맞춤형 자격 간에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(http://bokjiro.go.kr)를 통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함

② 종일형 자격 아동의 경우, 종일형 자격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고하고, 맞춤형 자격으로 변경 신청해야함

※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 지급 금액이 환수되거나 처벌 받을 수 있음

▣ 2016년 3월~6월 보육료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.

※ 2016.7월 이후부터 '맞춤형보육' 제도 시행에 따라 지원기준·단가 등이 변경될 수 있음

○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*하며, 이용중인 어린이집에서 '아이행복카드'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됩니다.

※ 단,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에는 입소일부터 지원

< 보육료 지원 단가('16.3월~6월) >

- 0-2세보육료: 0세 418천원, 1세 368천원, 2세 304천원
- 3-5세 누리과정보육료(누리장애아) : 220천원(438천원)
- 장애아보육료 : 438천원 (연령구분없음)
- 방과후보육료(장애아방과후) : 100천원(219천원)

○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'일할계산' 하여 지원되며, 계속 재원중인 아동은 출석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됩니다(월 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)

- 출석일수 11일 이상 :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100% 지원
- 출석일수 6~10일 :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50% 지원
- 출석일수 1~5일 : 월 정부지원보육료 단가의 25% 지원

※ 단, 아래와 같은 경우,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

- 아동의 질병·부상 또는 부모의 입원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, 결석 시작일로부터 치료기간 또는 퇴원일(부모의 입원에 따른 경우는 퇴원일까지만 해당)까지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
- 부모의 출산으로 아동이 어린이집에 나오지 못할 경우, 출산일을 기준으로 최대 2개월간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 지원

* 출석인정을 위해서는 어린이집은 의사소견서,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,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(병원 등 발급), 출생신고 후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부모로부터 제출받아 시·군·구청에 제출하여야 함

※ 출석일수 미달,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보육료를 100%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
▣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만 0~2세 및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 외 기본보육료를 추가적으로 지원(정부에서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원) 하고 있습니다.

< 기본보육료 지원 단가('16.3월~6월) >

- 만0세 383천원, 만1세 185천원, 만2세 121천원, 장애아 402천원

○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'일할계산'하여 지원되며,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1일 이상 출석할 경우 전액 지원합니다.

※ 출석일수 미달, 보육료 신청 지연 등으로 기본보육료를 100%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부모의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

※(참고사항)

○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민간·가정어린이집 등 이용 유아(만3세 이상)의 경우, 정부지원 보육료와 시설 수납금액의 차이만큼 추가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○ 모든 어린이집에는 보육료 외에 기타 필요경비(입학준비금, 현장학습비 등) 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※ 1개월 미만 이용 후 퇴소 시 입학준비금 50%를 돌려받을 수 있으나 관련물품이 해당 영유아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2. **(양육수당)** 보육료나 유아학비,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▣ 월령별 세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으며, 매월 25일경 신청 시 제출하신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.

<table>
<tr><th>연령
(개월)</th><th>양육수당</th><th>연령
(개월)</th><th>농어촌양육수당</th><th>연령
(개월)</th><th>장애아동
양육수당</th></tr>
<tr><td>0~11</td><td>200천원</td><td>0~11</td><td>200천원</td><td rowspan="3">0~35</td><td rowspan="3">200천원</td></tr>
<tr><td>12~23</td><td>150천원</td><td>12~23</td><td>177천원</td></tr>
<tr><td>24~35</td><td>100천원</td><td>24~35</td><td>156천원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36이상~
84개월
미만</td><td>100천원</td><td>36~47</td><td>129천원</td><td rowspan="5">36이상~
84개월
미만</td><td rowspan="5">100천원</td></tr>
<tr><td>100천원</td><td rowspan="4">48이상~
84개월
미만</td><td>100천원</td></tr>
<tr><td>100천원</td><td>100천원</td></tr>
<tr><td>100천원</td><td>100천원</td></tr>
</table>

▣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, 그 외의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
3. **(서비스변경)** 서비스 변경 시에는 해당 읍·면·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(http://bokjiro.go.kr)를 통해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로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서비스 변경간 적용기준이 각기 다르므로 사전에 변경처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▣ 양육수당 ↔ 보육료(유아학비)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변경 구분	지원내용	
	15일 이내 변경신고 시	16일 이후 변경신고 시
양육수당 ↓ 보육료	- 해당 월 **양육수당 미지급** - 신청일부터 **보육료** 지원 자격 부여	- 해당 월 **양육수당** 전액지원 -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
보육료 ↓ 양육수당	-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- **양육수당** 전액지원	- 해당 월 이용일까지 **보육료** 지원 - 익월 1일부터 양육수당 지원
양육수당 ↓ 유아학비	- 양육수당 미지급 - 신청일부터 **유아학비** 지원	- 해당 월 **양육수당** 전액지원 - 익월 1일부터 유아학비 지원
유아학비 ↓ 양육수당	-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- 해당 월 **양육수당** 전액지원	- 변경신고일까지 **유아학비** 지원 -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
양육수당 ↓ 농어촌 양육수당 ↓ 장애아동 양육수당	- 해당월 자격 책정된 신규서비스 지원(이전자격 지원불가) * 자격책정일이 15일 이내일 경우	- 해당월 변경 이전 서비스 지원(익월 1일부터 신규서비스 지원) * 자격책정일이 16일 이후일 경우

▣ 보육료(양육수당) ↔ 영아종일제, 유아학비 간 변경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변경 구분	지원내용	
보육료 ↕ 영아 종일제	● 보육료→영아종일제	● 영아종일제→보육료
	- 해당 월 이용일까지 **보육료** 지원 -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	- 변경신청월 말일까지 **종일제** 지원 -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자격 부여
양육수당 ↕ 영아 종일제	● 양육수당→영아종일제	● 영아종일제→양육수당
	- 해당 월 **양육수당** 전액지원 - 익월 1일부터 영아종일제 지원	- 해당월 말일까지 **종일제** 지원 - 양육수당은 익월부터 지원
보육료 ↕ 유아학비	● 보육료→유아학비	● 유아학비→보육료
	-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	- 입소일부터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

4. **(부정사용)** 아동 허위등록 등의 보육서비스 이용권(아이행복카드) 부정사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